

[별표 2] <개정 2003.1.16, 2005.11.4>

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(제35조관련)

1. 사업의 규모

구 분	규 모
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	○3만제곱미터(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)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
관 광 농 원 사 업	○6만6천제곱미터 미만
농 어 촌 민 박 사 업	○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2. 시설기준

구분	시설의 종류	시설기준
농 어 촌 관 광 휴 양 단 지 사 업	농림어업전시관 (기 본 시 설)	○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
	학 습 관 (기 본 시 설)	○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
	지 역 특 산 물 판 매 시 설	○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
	체 육 시 설	○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
	휴 양 시 설	○원두막·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	그 밖 의 시 설	○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관 광 농 원 사 업	영 농 체 험 시 설 (기 본 시 설)	○식량작물·특용작물·약용작물·채소·과수·화훼·유실수·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, 농업용저수지·조류사육장·초지·축사·양어장·유리하우스(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)·분재원 등 농수산물생산을 위한 토지 및 시설(자연림·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를 제외한다) 면적이 2,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
	지 역 특 산 물	○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

	판 매 시 설	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
	체 육 시 설	○영 제76조제1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
	휴 양 시 설	○원두막 또는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	음 식 제 공 시 설	○영 제76조제2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
	기 타 시 설	○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농 어 촌 민 박 사 업	기 본 시 설	○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출 것

비 고 : “기본시설”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.